

美軍政期(1945年—1948年)의 우리나라 人事行政制度

吳錫泓

— 目 次 —

- | | |
|----------------|-----------------|
| (一) 序 論 | (六) 報 酬 |
| (二) 美軍政期의 人事政策 | (七) 服務 및 勤務成績查定 |
| (三) 人事行政機關 | (八) 訓 練 |
| (四) 任 用 | (九) 結 論 |
| (五) 職 分 類 | |

(一) 序 論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歷史를 通하여 官僚制度의 固有한 原型(pattern)을 形成해 왔으며 그것은 또한 時間的 變遷속에서 많은 變容을 겪어온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歷史上 統一新羅를 거쳐 高麗朝와 李朝末에 이르기까지 中國大陸의 國家形勢와 그 制度의 濃厚한 影響下에 우리의 官僚制度가 成長하여 왔었고 所謂「唐宋制」에 依한 封建絕對官僚制의 根幹을 維持해 오다가 李朝末期에 이르러 그리고 本格의으로는 日帝下에서 비로소 近代의인 官僚制度의 導入이 植民政府를 通하여 他律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官僚制度는 이때에 어느 意味에서 質的인 面目的 一新을 보게 된 것이다. 이 時期에 制度樹立의 標本이 되었던 것은勿論 當時의 日本을 거쳐 輸入된 歐羅巴의 制度 卽 이른바 大陸系統의 制度였지만 거기에 日本의 帝國主義的傳統과 植民地的要素가 加味되었다.

1945年 우리는 日帝의 犬綱에서 解放되고 2年餘에 걸친 美軍政下에 놓이게 되었다. 美軍政期에 우리는 처음으로 民主的인 現代公務員制度의 紹介를 받았으며 이어서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舊時代의制度와 思想을 打破하여 民主政府로서 發足하자 人事行政制度에 關하여도 全面的인 再建이 始作되었다. 그러나 建國初의 整頓되지 못한 雾圍氣 속에서 從來의 封建의인것과 帝國主義의인 것에 定礎하였던 制度의 어쩔 수 없는 踏襲과 美國의인 制

度의 没理解하고 無反省한 導入이 條理 없어 이루어 졌으며 이위에 蓄積되어 온 制度들은 그 가운데 無定見한 矛盾을 内包하고 또 制度의 不備와 缺陷이 是正되지 못한채 過去 10餘年間 維持되어 왔다.

그런데 最近 2·3年間 우리의 人事行政制度는 括目할만한 變革을 겪고 있다. 外國制度의 模倣에 치우치는 느낌도 적지 않으나 現代的인 人事行政制度의 完成을 向한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確實하며 過去 어느때보다도 人事行政制度의 改革에 많은 注意가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時期에 際하여 우리의 過去한 經驗을 反省하고 研究하는 것은 意味 있는 일이며 앞으로의 發展에 결코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解放以後 우리나라 人事行政制度發展의 第一場面이었으며 外國軍人에 依한 暫定的 統治라는 特異한 狀況下의 美軍政期에樹立되었던 人事行政制度의 概要를 考察하려 한다.

이 論文은 앞으로의 研究를 위한 하나의豫備的努力이며 書類調查의 方法에 依한 制度의側面의 考察이고 當時의 各種法令이 主要資料로 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二) 美軍政期의 人事政策

1945年 8月 15日 日本이 敗亡하자 우리나라에서 所謂 朝鮮總督行政은 끝이 나고 같은 해 9月 7日부터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1號의 發布와 함께 北緯 38 度線以南에 美軍政이 實施되기 始作하였으며 美軍政은 以後 2年 11個月間 繼續되었다.

비록 짧은 期間이기는 하였지만 美軍政下에서 많은 改革活動이 進行되었던 바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行政制度等 여러 方面에 걸친 이때의 努力を 要約해 보면 첫째 民主的政治秩序의 形成을 위한 努력을 들 수 있다. 民主的政黨과 政治指導者の 育成, 重要公職의 選舉制樹立, 國民의 民主主義的 啓蒙等 一聯의 活動이 그것이다. 둘째로 三權分立을 基調로 한 政府形態를 確立하였다. 卽「議會에 類似한 機關」(Semi-Legislative Assembly)인 南朝鮮過渡政府立法議院을 設置하고 司法部를 獨立시켰으며 思想統制를 위한 法的節次를 廢止하였다.⁽¹⁾ 셋째로 經濟再建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產業의 再建과 戰後의 「인프레」에 對處한 諸活動 및 土地改革等이 그 例이며 1948年 末까지 約 3年間에 걸친 美軍의 對韓援助金額은 2億 8千 5百萬弗에 達하였다.⁽²⁾ 넷째로 教育制度를 再建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1946年

(1) 「朝鮮過渡政府立法議院의 創設」(軍政法令 第118號, 1946年 8月 24日) 및 「法院組織法」(軍政法令 第192號, 1948年 5月 4日) 參照.

(2) Kyung Cho Chung, Korea Tomorrow,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U.S.A., 1956, p. 194.

에는 教育使節團을 美國에 派遣하여 새로운 教育制度移植을 準備케 하였으며 教科課程을 刷新하고 教育施設을 擴充하였다.

이와 같은 多方面의 改革活動과 함께 行政制度의 革新 또한 迅速히 이루어졌다. 勿論 美軍政初期에는 舊朝鮮總督府의 行政機構를 大體로 踏襲하여 利用하였으며 當時 美軍政長官의 地位는 舊日本總督의 地位를 차지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朝鮮總督府의 政務總監이 位置하였던 자리에는 韓國人民政長官을 任命하여 中央廳所屬의 各局을 掌握케 하였다.⁽³⁾

그러나 軍政當局은 植民地統治를 위하여 設置되었던 摧取機關이나 統制機關들을 漸次로 廢止하고 福祉行政과 對民奉仕를 為主로 한 行政機構를 新設 또는 強化하였으며 從來의 局을 部로 課를 處로 昇格시켜 獨立國家의 行政機構로서 그 面貌를 갖추게 하였다.⁽⁴⁾

日帝下에서 施行되었던 法令들은 軍政法令 第 21 號에 依하여 그 效力이 維持되었으나 많은 植民地的 惡法이 廢止되었으며 民主的立法이 進行되었다.

人事行政面에 있어서 日本人官吏를 韓國人과 美軍職員으로 交替하는 作業은 아주 迅速하였다. 1946年 1月末日까지 約 70,000 人の 日本人職員中 60人만이 殘留하였다. 이러한 交替作業은 言語上의 困難性, 文化的相異性 그리고 實情에 對한 知識의 缺如를 무릅쓰고 이루어진 것이며 처음에 軍政當局은 保守的이고 親日的인 要素를 지닌 有產層人士를 많이 起用하고 英語를 할 줄 아는 韓國人에게 依存하였기 때문에 「通譯政治」(Interpreters' Government)라는 稱號를 받기도 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人的缺陷에도 不拘하고 漸次로 韓國人에게 各部署의 責任을 맡기고 美國人은 顧問의 資格으로 물려서는 措置를 取해 갔다.

當時의 北韓에서 와는 달리⁽⁶⁾ 舊總督府에 勤務하던 韓國人과 日本式教育을 받고 官僚의 經驗이 있는 韓國人을 採用하여 韓國人의 全面配置에 當하였으며 1947年 7月 現在 3,231名의 美國人과 約 40,000名의 韓國人이 美軍政廳에 勤務하고 있었다고 한다.⁽⁷⁾ 이와 같이 볼 때 人的要素에 있어서in限 根本的인 刷新이 斷行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朴文玉, 「行政學」(서울, 博英社, 1962), p. 241.

(4) 그例로서 朝鮮總督府官房地方課廢止, 朝鮮總督府經濟局經濟警察課廢止, 朝鮮金融統制會의 解散, 地方行政의 變更, 道機構의 改革, 衛生局設置, 朝鮮政府官房外事課의 設置, 公報局의 設置, 勞動調整委員會設置, 上木部의 設置, 婦人局設置, 司稅局의 機構改革, 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等을 들수 있다. 그리고 「朝鮮政府各部署의 名稱」(軍政法令 第64號, 1946年 3月 29日) 參照.

(5) Kyung Cho Chung, op. cit., pp. 188—189.

(6) Department of State, U.S.A.,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7118, Far Eastern Series 103, Released January 1961), pp. 64—65. 解放當時 北韓에는 겨우 約 20,000名의 韓國人官公吏가 있었는데 大部分은 警察官吏이었거나 下級行政職員이었고 이들은 거의 全員이 日帝下에 勤務하였다는 理由로 官職에서 排除되었다.

(7) McCune,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Journal of Politics, Vol. IX, 1947), p. 614

한편 美軍政廳은 人事行政에 關한 諸制度를 樹立함에 있어서는 過去의 傳統이나 官僚의 實態를 거의 考慮하지 않는 것 같은 態度를 取하여 全혀 次元을 달리하는 現代的 制度들을 一朝에 輸入하였었다. 그리하여 職階制를 비롯한 美國式制度들이 直譯的으로 導入되었으며 成績主義, 職業公務員制度等의 概念이 우리나라에 紹介되었다.

어떻든 美軍政期는 우리나라 行政制度의 發展에 一轉機를 가져온 時期였으며 新로운 各種 人事制度의 導入은 그때까지의 우리나라 人事行政制度의 方向轉換에 커다란 刺戟이 되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때에 企圖된 여러가지 改革은 時間의으로 短은 期間內에 이루어 졌다는 것, 우리 國民自身의 準備가 거의 없이 他律의으로 進行되었다는 것, 解放後라는 激動期에 그리고 社會秩序가 混亂하고 新舊의 또는 左右의 思想이 激突하던 時期에 急作스럽게 이루어 졌다는 것, 우리나라에 對한 知識이나 理解가 充分하지 못한 美軍의 主宰로 計劃이 樹立되었다는 것, 그리고 改革된 制度를 勘當할 訓練된 人的資源이 缺如되었다는 것 等 여러가지 理由로 朴質한 成果는 거두지 못하였으며 特히 人事行政制度는 우리의 實情을 考慮함이 없이立案된 듯한 느낌이 짙고 從來의 制度와는 性格을 달리 하였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對한 經驗이나 理解가 없었기 때문에 導入된 制度들의 運營이 成功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三) 人事行政機關

美軍政開始初에는 예전 總督府의 官房人事課⁽⁸⁾의 機構를 그대로 襲用하였으며 이러한 「人事課」에서 中央政府의 人事關係業務를 擔當하게 하였으나 그後 1945年 12月 20日에는 官房人事課를 朝鮮政府官房民政課로 改正하고⁽⁹⁾ 다시 1946年 4月 20日에는 「人事行政處」를 設置하여 中央政府의 人事行政機關으로 機能하게 하였으며 警察人事에 關하여는 따로 中央警察委員會를 두어 이를 管掌케하였다.

人事行政處의 設置와 때를 같이 하여 中央의 各部 및 各處와 그 「代行機關」에 「人事課」(Operating Personnel Office)를 두고 各道와 서울特別市에는 「人事處」(Civil Service Office)를 設置하였으며 中央의 各部, 各處 및 道와 서울特別市에는 「人事行政官」(Personnel Officer)과 「訓練擔當官」(Training Supervisor)을 配置하였다. 人事處는 人事行政處에서 道 또는 서울特別市의 人事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設置한 道 또는 서울特別市分署이었으며 人事課는 人事行政處의 承認에 依하여 一定한 人事關係事務를 處理하는 責任이 委託된 代行機關이며 人

(8) 行政大學院, 「朝鮮總督府機構解說」, (調查資料 第 5號, 1960), p.2. 總督官房人事課의 職務는 官吏 嘱託員 및 雇員의 進退, 身分, 叙位, 叙勳 및 포상, 恩給, 王公族, 朝鮮貴族 및 李王職, 典禮 및 儀式에 關한 事項이었다.

(9) 「人事課를 朝鮮民政課로 改稱」(軍政法令 第 38 號, 1945年 12月 27日) 參照.

事行政官은 所屬政府代行機關內에서 上司에 對하여 人事行政法規의 適用과 實施의 責任을 지고 있었다.⁽¹⁰⁾

(1) 人事行政處

人事行政處(Office of Korean Civil Service)는 單獨制의 中央人事機關으로서 人事行政事務의 方針을 樹立하고 이를 實施할 責任이 있는 中央政府의 一部署이었으며 法制上 民政長官의 所屬이었으나 事實上決定權者는 다른 行政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軍政長官이었다고 하며 人事行政處는 主로 政策樹立에 關한 權限을行使하였고 人事業務의 實際運營은 各部處에 있는 人事課에 分擔되어 있었다고 한다.⁽¹¹⁾

人事行政處長은 美國軍人으로 任命하였으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韓國人으로 交替하였다.

人事行政處의 組織과 機能은 大體로 다음과 같다.⁽¹²⁾

(A) 組織

人事行政處는 美軍政廳의 中央行政機關인 「處」의 하나로서 設置되었으며 單獨制(Director-type)인 處長을 任命하여 法上으로는 民政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人事行政處내에는 처음에 處長室, 總務署, 補任署, 職制署, 調查署, 考試署, 訓練署, 恩賞署가 있었으나 1948年 4月 20日에 内部組織을 改正하여 處長室(Office of Director), 行政室(Administrative Unit), 職制局(Classification Bureau), 考試局(Examination Bureau), 銓叙局(Record and Investigation Bureau), 訓練局(Training Bureau)을 두었다.

委員會制를 採擇하지 아니하고 單獨制機關으로 構成한 것이라든가 組織上의 獨自性이나 政治的 中立性과 같은 原理가 깊이 考慮되지 않았다는 것은 軍政이라는 特殊性에 비추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며 當時의 政府規模를 미루어 볼 때相當히 本格的인 中央人事機關의 構成이었음을 알 수 있다.

(B) 機能

人事行政處의 職能規程에 나타난 任務와 職能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事項을 包含한 朝鮮政府의 人事行政制度를 規定, 指示 또는 執行한다.

(가) 現行事務의 種類와 難易에 依하여 政府職務에 關한 各職位의 分類

(나) 各職位에 對한 等級, 名稱, 輝酬, 勤務時間, 任務, 責任 및 資格의 規定

2. 다음 事項을 包含한 政府奉職者の 採用, 配置, 養成을 規定, 指示 또는 執行한다.

(가) 志願者的 性格, 誠實, 履歷, 資格 또는 適性의 調査

(10)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人事行政規程 第1號(1946年 6月 13日), 第2項 參照.

(11) 朴東緒, 「韓國人事行政의 歷史的展開」、韓國研究叢書 第11輯(서울, 韓國究研圖書館, 1961), p. 111.

(12) 「人事行政處의 職能規程에 關한 件」(軍政法令 第69號, 1946年 4月 20日) 및 前揭 人事行政規程 第1號와 南朝鮮過渡政府人事行政通報 第1號의 2(職務分擔規程改正) 參照.

- (나) 志願者의 資格 또는 適性을 決定하기 위한 試驗의 準備와 施行
 - (다) 調査 및 試驗에 依하여 決定된 長處와 適性을 基礎로 한 資格者名簿의 證明을 法令 또는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한 任命官에게 指令하는 것.
 - (라) 政府職員의 養成順序
3. 政府職員에 對한 退職, 無資格, 福利의 方針을 計劃, 樹立, 執行한다.
 4. 重要한 公式日에 政府職員이 遵守할 儀式의 節次를 規定하고 그 遵守狀況을 監視한다
 5. 人事行政規程과 規則을 制定한다. 人事行政處長은 人事行政規程 또는 規則을 制定하여 軍政長官의 決裁를 얻은 後 官報에 公布하며 그 任務遂行에 必要한 分署를 設置할 수 있다

上記한 諸機能은 뒤에 人事行政規程으로 補完되었는데 이에 依하면 法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職能을 遂行하도록 規定하였다. 即 (가) 文官職制의 規定, 指導 및 實行 (나) 政府職員의 募集, 考試, 調査, 訓練 및 任命에 關한 計劃의 設定, 指導와 實行 (다) 政府職員에 對한 報酬, 執務時間, 出缺勤, 人事處理 및 提議, 執務成績, 職員關係等에 關한 規程의 制定, 指導 또는 實行 (라) 職員의 隱退 其他 特典에 關한 規程의 制定, 指導 및 實行 (마) 人事行政處와 一般社會의 公共關係를 樹立하며 重要한 公式日에 職員이 遵守할 儀式의 序次를 制定하고 그 狀況을 監督하는 것 等의 職務를 擔當하게 하였다.

이러한 人事行政處의 諸機能은 當時 美國人事委員會의 機能을相當한 部分 본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表見上으로는 아주 現代的인 것이었다. 特히 人事規程의 制定이라든가 執務成績查定에 對한 異議의 最終決定과 같은 것은 劃期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部分的으로 實現된 것도 있지만 人事行政處의 全體機能이 效果的으로 發揮되었던 흔적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2) 中央警察委員會

南朝鮮過渡政府내에 設置되었던 中央警察委員會는 軍政長官의 直接責任下에 있었으며 그組織과 機能은 다음과 같다.⁽¹³⁾

(A) 組 織

中央警察委員會는 委員 6人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推薦된 사람 가운데서 任命한다. 委員中 2人은 民政長官이 各部處長中에서 다른 2人은 司法部長이 審判官 또는 檢察官中에서 각각 推薦한다. 警察部長은 票決權이 없는 委員이 된다.

이와같이 委員으로 任命된 有給官公吏는 中央警察委員會의 執務에 對하여 手當을 받지 않는다.

(B) 職務와 權限

中央警察委員會는 警察人事뿐만 아니라 警務政策에 關한 職務까지를 遂行하였었는데 그職務와 權限은 다음과 같다.

(13) 「中央警察委員會의 設置」(軍政法令 第 157 號, 1947年 12月 25日) 參照.

- (가) 重要한 警務政策의 樹立과 警務部長이 同附한 警務政策 및 그 運營의 審議・決定
- (나) 警察의 處分行爲에 關하여 警察官吏의 召喚과 訴問
- (다) 警務部長이 推薦한 5級以上의 警察官吏의 任免・異同의 審議・決定
- (라) 警察查問委員會의 決定의 再審
- (마) 其他 警察部關係事項으로서 軍政長官이 同附한 事項의 審議

이와같은 中央警察委員會는 完全한 警察人事機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一般的인 審查機關의 性格을 가진 機構로서 政策의 立案과 審議, 警察官吏의 任免과 異同의 審查・決定,懲戒決定의 再審等 警察部關係事項을 管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軍政治下의 警察力維持와 治安의 確保는 特別한 重要性을 가진 것이므로 이러한 機構를 軍政長官直屬으로 設置하였을 것이다.

(四) 任用

軍政當時의 任用計劃이나 制度를 가운데서 特히 言及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成績主義의 宣言

人事行政處의 設置와 함께 官吏에 任命되기 위하여는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는 成績主義의 原則을 樹立하였다.

即 軍政法令 第 69 號 第 4 條에 依하면 政府에 採用될 者는 任命의 職位의 擔任에 必要한 誠實・適性을 確認하기 위한 文官試驗에 合格하여야 하며, 選舉制職員, 辯護士會의 相當한 地位에 있는 辯護士(政府의 法律事務所 또는 司法部의 規定職位에 或은 司法官, 判事, 檢事로 任命된 때), 外國人專門顧問官, 特別臨時設置專門家 또는 法令에 依하여 特히 除外된 其他職位는 例外로 하였다.⁽¹⁴⁾

그러나 이러한 成績主義의 原則를 내세웠음에도 不拘하고 軍政期間中 새로운 試驗制度가立案되었다거나 公開競爭試驗이 實施된 일이 없었다는것은 名實이 符合하는 成績主義가 實現될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¹⁵⁾

따라서 成績主義는 하나의 理想이며 宣言的 「프로그램」의 性格을 가졌던 것이라 하겠다. 그 때의 政府業務와 各職位의 職務基準이 確立될 겨를이 없었고 政府의 人力需要는 急作히 늘어나고 訓練된 人的資源은 不足하고 試驗實施部署는 整備되지 않은 狀態에서 正常軌道에 오른 成績主義의 實現화가 不可能하였을 것임은 足히 斟酌할 수 있는 일이다.

試驗合格이라는 任用條件와 關聯하여 地方官吏의 任用에 居住地制限(Residential Requirement)을 規定하는 制度도 이때에 나타났었다.⁽¹⁶⁾

(14) 前揭軍政法令 第 69 號, 第 4 條 參照.

(15) 朴文玉, 「韓國政府論」(서울, 博英社, 1963), p. 343. 人事行政處는 普通文官試驗을 한번 實施한 例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施行한다는 發表도 없이 公開되지 않은채 實施되었다고 한다.

(16) 「서울市憲章」(1946年 8月 10日), 第 7 條 參照.

(2) 現職者의 職位保有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1號「朝鮮住民에게 布告함」第2條에서 政府, 公共團體 또는 其他의 名譽職員과 雇傭 또는 公益事業, 公衆衛生을 包含한 公共事業에 從事하는 職員과 雇傭人은 有給·無給을 不問하고 또 其他 諸般重要한 職業에 從事하는 者는 別命있을 때까지 從來의 職務에 從事하고 또한 모든 記錄과 財產의 保管에 任하라는 命令을 發한 後 美軍政은 韓人官僚와 親日的所行이 뚜렷한 韓國人은 勿論 初期에는 日本人官僚까지도 繼續使用하였다. 따라서 人員의 交替를 斷行하지 못하고 舊態依然한 官僚를 이끌고 民主主義的 行政制度의 導入과 運營의 效率化를 期하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임을 理解할 수 있으나, 行政事務의 中斷과 이에 따른 混亂을 避해야 했고 反面 訓練된 人的資源은 缺如된 그때의 事情으로는 어쩔수 없는 措置이 있을 것이다. 左右間 이때에 官僚들이 現職에 留任하게 된 影響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官僚制度의 根底에 남아 있게 되었다.

(3) 職員의 臨時任命

위에 말한 바와 같이 現職者는 우선 職位를 保有하도록 暫定措置를 取한 後 身分保障敘는 臨時職員을 任命하여 事後整理의 可能性을 남겨 두었다. 即 軍政長官이나 또는 그 指令에 依한 朝鮮政府 그 代行機關 其他 下級官廳의 職員任命은 臨時任命이며 언제든지 軍政長官이나 그 指令에 依하여 解除할 수 있었다.⁽¹⁷⁾ 이와같은 臨時任命은 情實任用이나 獵官制라고 단 簡單히 說明하기 어려운 特殊한 것이며⁽¹⁸⁾ 또한 軍政期間中 成績制의 現實化가 어려운 實情에서 그 身分을 保障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官公吏任免

官公吏任免의 節次와 任命權者는 다음과 같다.⁽¹⁹⁾

1. 民政長官級 以上의 行政官은 1946年 8月 24日附 法令 第118號 第5條(南朝鮮過渡政府立法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行政身分 4等級以上의 모든 官職任命을 再審查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索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에 規定한대로 朝鮮過渡政府立法議院이 認准할 것을 條件으로 하여 軍政長官이 이를 任命한다.
2. 各部處長, 道知事 및 서울特別市長은 民政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軍政長官이 이를 任命한다.
3. 各道內의 任命은 當該道知事が 行하나 法令에서 要求하는 경우에는 朝鮮人事行政處의 承認을 條件으로 한다.

(17) 「職員의 名札貼付 及 臨時任命」(軍政法令 第16號, 1945年 10月 24日), 第2條 參照.

(18) 姜秀禱, 「公務員法精解」(서울, 考試學會, 1963), p. 115 參照.

(19) 「官公吏任免」(軍政法令 第135號, 1946年 3月 15日) 參照.

서울特別市內의 任命을 서울特別市長이 行하는 경우에도 같다.

4. 各部處內의 任命은 當該部處長이 이를 行하며 法令이 要求하는 경우에는 朝鮮人事行政處의 承認을 條件으로 한다.

5. 各官職의 解任은 上記한 바와 同一한 權限 및 節次에 依하여 行한다.

그리고 任命에 關하여 以上과 같이 賦與된 權限은 軍政長官이 언제나 取消할 權限을 保留하여 人事統制를 可能하게 하였다. 따라서 任命權의 規定은 단지 任命權의 内部委任의 性質을 가졌음에 不過하였다.

(5) 朝鮮職員의 檢查

日帝植民地治下에서 解放되어 全혀 새로운 統治秩序를 樹立한 軍政期의 特殊事情에 따라 官公吏中에서 親日 또는 利敵行爲를 한 者의 排除를 目的으로 朝鮮職員檢查委員會를 設置하고 現職官公吏 또는 새로이 官公吏에 採用될 者의 審查에着手하였다.⁽²⁰⁾

朝鮮職員檢查委員會는 南朝鮮軍政廳의 檢查機關으로서 活動하였는데 民政長官이 指令한 7人의 委員으로 構成되고 民政長官이 定하는 期間 그 任務를 行하게 되어 있었던 바 그 任務, 權限 및 管轄範圍는 다음과 같다.

1. 軍政廳의 官職을 가진 또는 軍政廳의 官職을 請願하는 朝鮮人の 親日 또는 利敵行爲를 探查하는 것이 그 任務이다.

2. 이려한 探查는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또는 軍政廳局長, 課長, 道長官 또는 軍政班指揮者의 請求에 應하여 或은 該委員會의 自意에 依하여 이를 行한다.

3. 이 委員會는 委員長의 召集으로 開會하고 證言을 聽取하고 證人, 書類, 其他 證據品을 呼出하고 判定과 意見書를 軍政長官에게 提出한다.

이려한 朝鮮職員檢查委員會의 設置는 當時의 「反民特委」 또는 「特別犯罪調查課」「檢察課」等과 함께 一般의 또는 官僚集團의 淳化를 위한 一聯의 計劃이었으나 所期의 成果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親日 또는 利敵行爲를 한 官僚를 特別히 調查하고 處罰한다는 것은 特殊한 過誤없는 舊總督府의 韓人官僚를 全面的으로 吸收한 까닭에 일어났던 問題이기도 하다.

(五) 職分類

美軍政期의 人事行政制度에 있어서 가장 特記할만 한 것은 職階制의 實施이다. 이것은勿論 純全히 美國式制度를 그대로 導入한 것인데 親任官, 勅任官, 奏任官, 判任官, 吏員等의 階級에 依하던 舊總督府의 分類制度와는 全혀 性格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 1946年 5月부터 中

(20) 「朝鮮職員檢查委員會의 創設」(軍政法令 第29號, 1945年 11月 16日) 參照.

央과 地方의 全文官職에 適用하였던 分類規程⁽²¹⁾에 依하면 「職位」(Position)은 그 任務와 責任 및 遂行할 職務의 重要性에 鑑하여 「等級」(Class) 「職務」(Service) 및 「等別」(Grade)에 配置하는 方法으로서 同一한 困難性과 責任이 있는 職位는 同一한 債給을 그리고 高度의 熟練과 重大한 責任을 要하는 職位는 低度의 熟練과 輕小한 責任을 要하는 職位보다 多額의 債給을 받도록 適當한 債給階段에 分類된 職位와 相關關係를 가지며 標準職名을 設定하고 그 任務와 責任 및 所要資格의 解說에 依하여 各等級名稱의 定義를 制定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職位는 그에 就任할 職員에 拘碍되지 않고 分類規程에 依하여 分類되었다.

(A) 分類

모든 職位는 4個의 「職務」(Services)로 分類된다. 即 書記的・行政的 及 財務的 部門에 關한 職務(The Clerical, Administrative and Fiscal Service), 專門的 及 技術的部門에 關한 職務(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 手練的・防衛的 及 保管的 部門에 關한 職務(The Crafts, Protective and Custodial Service) 그리고 別定職務(The Excepted Service)로 分類되며 前三者의 職務는 各己 分類된 集團을 가지며 이하한 集團內의 職位는 職務, 等級 및 等別로 配置되고 이에 對한 職員任用은 競爭試驗에 依하여 債給의 率은 人事行政處에서 決定하였다. 別定職務는 別定한 職位의 集團을 가지며 이하한 集團內의 職位는 職務와 等級으로 配置되고 職員任用은 競爭試驗에 依하지 않으며 債給의 率은 人事行政處에서 決定한다.

(가) 書記的・行政的 及 財務的部門에 關한 職務(CAF)는 그 任務가 書記的・行政的・會計的 事務 또는 普通의 公務, 庶務, 財務 또는 一般行政에 關한 其他事務를 遂行하는 一切의 等級의 職位를 包含하며 이를 다시 15 等別로 나누었는데 司計員, 檢政員, 參事, 處次長, 行政官, 行政長, 人事行政官, 人事行政參事等의 職位가 여기 包含되었다.

(나) 專門的 及 技術的 部門에 關한 職務(P&T)는 그 任務가 專門的 또는 科學的 原理에 基하여 專門的, 科學的 또는 技術的 訓練을 要하는 事務를 遂行하는 一切의 等級의 職位를 包含하며 15 等別로 區分되고 農業技士, 農耕士, 建築士, 法務士, 化學士, 博物監, 無線技士, 經濟士 等의 職位가 여기에 包含되었다.

(다) 手練的・防衛的 及 保管的部門에 關한 職務(CPC)는 그 任務가 治安의 維持에 包含된 事業의 監督과 遂行, 公共建物, 垦地 및 備品의 保管, 維持와 防衛, 國營運輸 및 通信系統의 維持等 一切의 等級의 職位를 包含하고 15 等別이 있으며 警監, 總警, 巡警, 消防長, 消防員, 刑事, 電工, 守衛, 工場監督, 製機工, 勞務員等의 職位가 여기에 包含되었다.

(라) 別定職務(ES)는 ①競爭試驗에서 除外된 職位 ②謝禮, 契約 또는 請負制로 使用하는 職位 ③選舉에 依하여 任用하거나 選舉職位의 曠缺로 因하여 任命된 職位 ④日給制로 使用하는 職位 ⑤會議, 委員會 또는 評議會의 議員 및 委員의 職位 ⑥一般司法關係職位等을 包含

(21)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人事行政規程 第2號(職位分類規程) 參照.

한다.

(B) 分類制의 實施

(가) 職位의 配置(Allocation on Positions)

中央政府의 各部・處, 道의 各部 및 分署의 모든 職位는 人事行政處에서 그 任務, 權限 및 責任에 基하여 適當한 職務와 等級에 配置한다.

(나) 職位의 設置와 廢止

職員任命權을 가진 者는 法的擔任事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報酬支給의 經費가 許하는 限職位의 設置를 人事行政處에 要求할 수 있다. 人事行政處는 新職位를 設置하기 前에 이려한 新職位를 그 任務, 權限 및 責任에 基하여 適當한 職務, 等級 및 等別에 配置하여야 한다. 또 한 職位는 人事行政處에서 制定한 職位配置表에 包含된 職位에 限하여 設置된다.

人事行政處는 不必要한 職位를 廢止할 目的으로 定期審查를 行하고 職員任命權이 있는 者는 職位의 廢止理由를 陳述하여 그 廢止를 人事行政處에 要求할 수 있다. 職位는 人事行政處에서 制定한 職位配置表에서 刪除함으로서 廢止된다.

(다) 職位의 再分類

任命權이 있는 者는 職位를 研究하여 適當한 等級에 配置할 때에 그 再分類를 要求할 수 있다. 職位의 任務와 責任의 어떠한 永久的變更이라도 반드시 人事行政處의 決裁가 있은 後에 效力を 發生한다.

(라) 이 밖에 人事行政處는 「職位配置表」(Schedule of Allotted Positions)와 「等級의 定義」(Class Definitions)를 作成하고 모든 政府機關은 人事行政處 또는 道人事處에 「職位解說」(Position Description)을 保管하여야 한다.

이려한 職階制는 美國制度를 猶地에 輸入한것으로 當時의 우리나라 行政體系에는 아주 生疎한 것이었고 또 實施된 制度自體가 充分한 研究·分析의 結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運營上 여러가지 無理가 있었음은 當然한 일이다. 따라서 當時의 論者들은 職位分類에 있어서 不公平하고 情實에 左右되었다는 것, 在職者들이 이미 좋은 職位는 모두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新規로 採用되는 者에게는 아주 不利하다는 것, 人事異動이 어렵기 때문에 行政機關間의 職員의 質的 差異가 甚해진다는 것 等의 理由를 들어 不平을 開陳하였다.⁽²²⁾ 이와 같은 여러가지 理由로 職階制의 導入은 成功하지 못하였으며 大韓民國政府의 樹立과 함께 分類制度는 다시 階級制로 還元되고 말았다.

(六) 報酬

一般職員에게 그 任務, 責任, 教育程度 및 執務狀況에 依하여 適當한 債給을 支給하는 制度

(22) 朴東緒, 前揭書, p. 112.

는 職位分類規程과 關聯下에樹立하였다.當時의 報酬規程⁽²³⁾은 備給의 最低에서 最高까지 等級과 階段別로 漸進的인 昇進을 하게 하고 一般職員에게 公正한 給料를 支給하는 基準을 規定한다고 하였다.

(A) 備給額

(가) 正規職에 配置된 職員의 年俸 및 月俸額은 다음과 같다.

年俸基準額				月俸基準額			
階段 級數	1號	5號	每階段의 額 差	階段 級數	1號	5號	每階段의 額 差
1	14,700	16,140	360	1	1,225	1,345	30
2	12,900	14,340	360	2	1,075	1,195	30
3	11,100	12,540	360	3	925	1,045	30
4	9,300	10,740	360	4	775	895	30
5	7,920	8,880	240	5	660	740	20
6	6,960	7,920	240	6	580	660	20
7	6,000	6,960	240	7	500	580	20
8	5,100	5,820	180	8	425	485	15
9	4,380	5,100	180	9	365	425	15
10	3,720	4,200	120	10	310	350	10
11	3,120	3,600	120	11	260	300	10
12	2,640	3,120	120	12	220	260	10
13	2,160	2,640	120	13	180	220	10
14	1,680	2,160	120	14	140	180	10
15	1,200	1,680	120	15	100	140	10

單位: 圓

資料: 報酬規程 附表 1 및 2.

(나) 技術專門家로써 日給制로 採用된 職員 即 熟練된 專門家, 技術者 또는 行政專門家는 60日 以內의 期間으로 任用할 必要가 있어 日給制로 採用하는 경우에는 먼저 人事行政處의 承認을 要하며 人事行政處로 부터 適當한 類別職位의 月俸基準額을 指示받는다. 이라한 月俸基準額에 月別生活手當金을 加算한 總額을 26으로 除하여 算出된 金額을 日給額으로 定한다.

(다) 別定職位의 年俸額은 다음과 같다.

部長(中央) 30,000 圓, 處長(中央) 30,000 圓, 國立綜合大學總長 24,000 圓, 道知事 24,000 圓, 部次長(中央) 21,000 圓, 上記 諸官에 屬한 秘書 3,720 圓, 서울市長 24,000 圓, 市長(一等) 14,700 圓, 郡守(一等) 9,300 圓, 邑長(一等) 7,920 圓, 面長(一等) 6,000 圓.

(B) 昇進(In-Grade Salary Steps)

· 1級 乃至 4級은 2年以上, 5級 乃至 9級은 1年 6月 以上, 10級 乃至 15級은 1年 以上

(23)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人事行政規程 第3號(報酬規程), 1946年 9月 20日 參照.

의期間을 誠實히 勤務한 者는 上位階段에 升進시킬 수 있다.

(C) 日給制職員

日給制職員의 給料는 正規職員에 比較 每月 26 分之 1의 比率을 超過하지 못하며 實際로 勤務한 日數 또는 時間割로 計算한다.

(D) 特勤 및 公休日勤務

特勤手當은 支給하지 않으며 有給職員이 正規時間外에 勤務한 때에는 그 代償의 休息時間 을 준다. 法定公休日에 執務한 者는 그 代償의 休日을 준다. (勤務規程에 依하여 後에 改正)

(E) 現物配給

俸給外에 公務員厚生行政處를 設置하여 官公吏 및 歸屬產業體의 被傭人에게 消費物資를 不定期의으로 割當·配給하였다.⁽²⁴⁾

이 때의 報酬計劃에는 各種手當制度, 賞與金制度, 退職金制度等의 規定이 없고 基本俸給額을 定하는 程度였다. 特히 當時의 報酬額으로는 職位의 上下를 莫論하고 生計를 維持할 수 없어 罷敗하고 致富하는 現狀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1947年 4月에 報酬額을大幅 引上(1級 5號가 年俸 51,120圓, 15級 1號가 年俸 21,240圓) 하였으나 生活의 基本需要를 充足할 수 없는 程度였다고 한다.⁽²⁵⁾ 基本生計費에 未達하는 우리 政府의 報酬額은 이때부터 비롯하여 아직까지 解決하지 못한 問題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職階制의 實現이 不完全하였기 때문에 公平한 報酬額의 策定이 困難하였을 것이고 改正된 報酬表에 依하면 上下等級間의 差額도 僅少하다.

(七) 服務 및 勤務成績查定

勤務規程과 勤務成績查定施行規程을 制定하여 休暇와 出勤에 關한 統一的標準을 決定하고 勤務成績評定制度를 樹立하였다.⁽²⁶⁾

(A) 服 務

(가) 出 勤

基準의 勤務時間은 一週日에 44 時間이며 最大限의 特勤時間은 一週日에 52 時間이었다. 每週 44 時間을 超過하여 特勤한 者는 그 願하는 바에 따라 特勤給與를 받거나 特勤時間數에相當한 時間을 給與期間內에서 減除할 수 있었다.

(나) 年 暇

有給休暇로서 每月 1日의 比率로 政府職員에게 許可하여 總計 36 日까지 累積할 수 있다.

(24) 「公務員厚生行政處의 設置」(軍政廳行政命令 第 12 號, 1946年 1月 12日) 參照.

(25) 朴東緒, 前揭書, p. 113.

(26) 軍政廳人事行政規程 第 9 號(勤務規程) 및 '南朝鮮過渡政府人事行政規程' 第 10 號의 改正(勤務成績查定施行規程) 參照.

年暇는月末에 發效하고 休暇期間中の 日曜日 其他の 休務日은 包含하지 않는다. 職員의 退職이나 休暇制가 相異한 他機關에 轉勤할 때에는 累積年暇에 對한 給與金의 總額을 支給하고 職員이 死亡할 때에는 當該受給者 또는 親族에게 給與한다. 各部處의 長은 年暇의 時日을 決定할 權限이 있다. 그리고 時間制와 日給制職員에게는 年暇가 없다.

(다) 病 暇

俸給을 支給하는 病暇는 하나의 特典으로서 病故, 傷害, 櫟姪 및 臨產 또는 醫療, 齒牙, 視力의 試驗検査와 治療等을 위하여 執務不能인 때 또는 直屬家族의 病故가 그 職員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때 또는 傳染病의 感染으로 因하여 그 職員의 出勤이 他職員의 健康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許可한다. 1個月에 2日의 比率로 病暇를 받고 總計 60日까지 累積할 수 있다. 病暇의豫許日數量 超過한 後의 缺勤은 年暇로, 年暇滿了後의 缺勤은 無報酬休暇로 處理한다.

(라) 無報酬休暇

無報酬休暇는 30日까지 各部處의 長이 許可하며 이를 超過하는 休暇는 人事行政處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에 貢獻할 教育의 目的으로 許可하는 休暇를 除外하고는 1回에 6個月 또는 全期間 12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마) 休暇에는 以上에 說明한 것 以外에도 法廷에 出廷하기 위한 休暇, 集會出席을 위한 休暇, 訓練參加와 投票參加를 위한 休暇, 妊產婦休暇, 兵役休暇等이 있다.

(바) 遲刻과 缺勤

3時間을 超過한 遲刻은 無報酬休暇로 處理한다. 事務形便에 依하여 부득이 한 遲刻은 容忍하지만 無理由한 常習的 遲刻은 解免의 理由로 된다.

政府를 위한 活動으로 確認한 缺勤에 對하여는 年暇로 取扱하지 않으나 無許可缺勤은 罷免의 理由로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比較的 詳細한 服務規則이 施行되고 있었다. 특히 年暇・病暇制度의 確立은 하나의 貢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數學的이고 機械的인 計算法이라든가 制度에 나타난 合理的, 分析的傾向은 當時의 官僚體裁에 適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勤務時間과 休暇만을 規定한 것은 服務規程의 未備라 하겠다.

(B) 勤務成績查定

中央廳과 地方廳의 全正規公務員으로서 6個月以上 勤務한 者를 對象으로 「勤務成績查定」(Performance Rating)을 實施하였다.

勤務成績查定에는 「正規查定」(Regular Ratings)外에 監督官의 異動, 職員의 轉勤이 있을 때 또는 升進内申, 減員實施의 경우 適切한 正規查定이 없을 때 實施하는 「特別查定」(Special Ratings)이 있다. 이러한 查定은 被查定職員의 執務에 直接 責任이 있는 監督者が 查定官

(The Rating Official)이 되고 檢定官의 監督官이 檢閱官(The Reviewing Officer)으로서 勤務成績查定報告書를 檢閱한다. 各部處와 道廳에는 勤務成績查定委員會(Performance Rating Committee)가 있어 勤務成績查定報告書의 檢閱, 承認, 節次監督, 職務標準의 均等與否調查, 檢定官 및 檢閱官의 訓練計劃推進等의 業務를 遂行하였다.

勤務成績查定에 對한 異議는 檢定通知書를 받은 때로 부터 30日 以內에 먼저 檢定官에게 提出하고 여기에서 滿足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人事行政官, 勤務成績查定委員會, 所屬 事務機關의 最高責任者에게 차례로 提出하고 最後로 人事行政處에 提出하여 人事行政處의 決定을 最終的인 것으로 한다.

勤務成績查定의 具體的인 內容은 資料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이때의 檢定制度는 그 體裁에 있어서만은相當히 發展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人事制度와의 聯關係이라든가 評定結果의 活用에 對한 規定이 明白히 되지 않았던 것은 制度의 整備를 다하지 못한 所以였을 것이다.

(八) 訓 練

近代의 行政技術을 修習케 하여 新任職員을 啓發하고 政府全職員의 能率을 漸進的으로 增進시키기 위하여 行政員訓練規程을 1946年 9月 12日에 制定하고 公務員의 訓練에 着手하였다.⁽²⁷⁾

(A) 訓練種類

처음에는 「豫備訓練」(Preservice Training), 「現職員訓練」(On-the-Job Training), 「昇進訓練」(Up-Grade Training)의 세 種類로 區分하여 實施하던것을 1948年 부터는 行政管理訓練, 監督訓練, 指導訓練, 書記訓練等으로 改正하여 實施하였다.

(B) 機 構

訓練實施에 關한 中央의 主務部署는 人事行政處의 訓練署(局)이며 訓練署의 責任은 政府의 事務能力을 效果的으로 增進・確保할 廣範한 訓練計劃을 立案, 指導, 調整 및 監督하는데 있었다. 人事行政處의 各 分署에는 訓練官이 있어 各機關의 訓練業務를 主管하고 人事行政處와의 連絡에 臨하였다. 訓練은 各部處와 道 및 서울特別市 그리고 代行機關에서 各各 實施하였으나 「行政員養成所」(Civil Service Training Academy)를 따로 設置하여 專攻(Full time)訓練을 實施하였다. 此 人事行政處의 訓練署는 一般教育機關에 進學하고자 하는 資格있고 有能한 政府職員에게 奨學金 授與를 勸誘하여 委託教育를 實施하였다.

「專攻訓練」을 擔任할 講師는 人事行政處訓練署 또는 그 分署의 訓練官이 이를 選任하였

(27) 軍政廳人事行政規程 第6號(行政員訓練規程), 軍政廳人事行政通報 6-1 및 同改正 參照.

다. 「現職員訓練」을 擔任한 講師는 關係各機關의 正規職員中에서 所要課目을 教授할 能力이 具備된 者를 當該機關의 長이 選任하도록 되어 있었다.

(C) 訓練의 實施

人事行政處訓練署는 公務員訓練의 方法 및 標準을 定하며 分署의 訓練官과 協力하여 그 實施狀況을 監督하고 訓練實施에 關한 報告書提出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이 있었는데 이에 한 責任과 權限은 人事行政處의 決定에 依하여 다른 人事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었다.

各部處, 局, 課 및 獨立政府機關은 職員中 1人을 特定하여 그 本來의 職務以外에 當該機關의 新任職員을 指導하게 하고 訓練擔當官은 事務便覽, 標準事務方法을 作成하여 配布하였다. 現在職責以上의 責任擔當能力이 있는 者는 昇進을 위한 訓練을 받게 하며 事務處理能力이 標準資格以下인 職員을 訓練시키고 監督官으로서 自己職責과 監督事務에 對하여 必要한 知識 或은 指導, 教授 또는 計劃의 機能이 不足한 경우에는 監督原理에 關한 訓練을 받게 하였다. 「專攻訓練生」(Full Time Students)의 選拔은 人事行政處 또는 그 分署가 決定한 比率에 依하여 所管長官이 指定하여 專攻訓練生의 無許可缺席은 訓練所 및 政府의懲戒處分 또는 龍免의 理由가 되는 것이었다. 現職員訓練班에 配置된 職員의 出席도 義務의이며 無許可缺席은 正規職務의 缺勤으로 處理하였다. 公務員이 訓練을 받는 期間에는 正規의 報酬를 받는다.

居住地에서 遠隔한 訓練所에 入所한 專攻訓練生에 對하여는 宿所, 學用品 및 教科書를 無償給與하고 所管行政機關은 通勤과 其他の 便宜를 提供하여야 하며 이러한 便宜가 없을 때에는 그 代償金을 支給하였다.

(D) 檢定

人事行政處訓練署長은 中央政府 및 道의 모든 訓練이 訓練規程 및 通報에 適合한가의 與否를 檢閱하고 評定한다.

그리고 專攻訓練課程修了者(Graduates of full time training schools)는 昇進의 保障을 받는 것은 아니나 昇進試驗에 있어 一定한 標準에 依하여相當히 考慮되었다.

軍政當時 新規採用職員과 在職者를 訓練시키는 問題는 至極히 重大하였을 것이며 比較的迅速하게 訓練業務에 看手하여 이 方面에 努力を 傾注하였다. 그러나 美國式制度를 본따 들인 訓練制度가 卽刻의 成果를 거두기 어려웠음은勿論 訓練의 基礎, 目標, 方法等이 또한 確立되지 못해서 그때 그때 臨機應變의 不均衡한 訓練을 實施한 程度였음을 알 수 있다.

(九) 結論

지금까지 解放以後 美軍政이 實施되었던 期間의 人事行政制度를 一瞥해 보았다. 이 時期를 한마디로 評한다면 民主的行政制度의 他律의 紹介期였다고 말할 수 있다.

美軍政이 우리나라에 實施되는 동안 軍政當局은 過去에 全히 經驗하지 못하던 그리고 우리가 거의 想像조차 하지 못했던 現代的人事管理制度 特히 美國式制度를 現實에 對한 깊은研究 없이 우리나라에 導入하였다. 그 顯著한 例가 人事行政處의 設置, 職階制의 實施, 公開競爭試驗을 包含한 成績主義의 宣言等이다.

人事行政上 이와 같은 急激한 變革은 여리가지 混亂도 惹起하였고 結果로부터 볼 때 成功的인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民主福祉國家에서 자라온 人事制度와 原理·原則들을 우리에게 紹介하였다는 意味는 있을 것이다:

大韓民國政府樹立後 第一共和國에 들어서면서는 美軍政期의 傾向에 비추어 오히려 人事行政制度의 退步를 생각케 하였으며 民主性, 能率性, 成績主義等 諸原則이 如前히 法的承認을 받아 採擇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具體的·個別的인 制度들과 그 運營狀況은 複雜 時代에 뒤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建國初期以來 官僚制度의 形成·維持가 舊態依然한 官僚들의 손에 依하여 이루어졌다는 理由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第一共和國의 한 時期는 어느 意味에서 民主的 行政制度의 定礎期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美軍政期의 制度樹立과 雾圍氣造成은 以後의 우리나라 公務員制度形成에 많은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는 點은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論文에서와 같이 制度의in 側面만의 考察로서 美軍政期의 人事行政制度가 後代의 制度樹立과 運營에 얼마나 寄與하였으며 오늘날까지의 「影響」이 어떤 方向으로 展開되어 왔는가를 正確하게 測定하여 決論하려는 것은 無理이며 따라서 이러한 問題는 提起된 問題로서 그대로 남게 된다.

(筆者 本大學院 助教)